

-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427
------------	------

2020년 4월 23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3일, 이광호 의원 외 14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20년 4월 8일

다. 상정일자

- 제293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교통위원회(2020년 4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광호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의 택시현황을 보면, 2020년 1월 기준 약 7만 2천여대(개인 49,523대, 법인 22,843대)가 보급되어 시민의 경제활동 및 대중교통 수단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해오고 있음
- 하지만 지속된 경기침체와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으로 인해 택시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택시운수사업자의 경영여건은 갈수록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택시운수종사자도 장시간 노동에 따른 건강 문제,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임
- 또한, 최근의 ‘타다’, ‘우버’ 등의 승차공유서비스의 등장으로, 4차 산업 혁명에 걸맞은 시민 이동편의개선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개선을 요구 받고 있음
- 더욱이, 최근 코로나19의 확산과 미세먼지 등의 위해(危害)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들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예방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이같이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택시산업 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7조)
- 감염병 또는 미세먼지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 및 예방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 택시서비스의 개선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제1항제4호)
-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을 규정함(안 제10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0. 4. 13. ~ 2020. 4. 21.

○ 제출의견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 원안동의

- 택시 5개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은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재정의 하는 것으로 수용코자 함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및 종사자의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용함

4. 검토보고 요지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수단 확충 및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택시 운영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택시산업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5년 주기의 종합계획과 종합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재원확보 및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택시산업 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안 제7조 관련)

- 동 개정조례안은 택시산업 발전과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장으로 하여금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5년마다 택시산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먼저, 5년 주기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서¹⁾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한 택시운송사업 발전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할 것임

다만, 법에서는 국토부와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을 각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5년 단위 계획을 ‘종합계획’으로 정하고 있는 바 추후 용어를 통일시킬 필요도 있을 것임

- 또한 종합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택시산업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고,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의 집행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을 것임

다만, 현행 조례 제8조2)에서는 시장이 택시 정책 평가와 의견수렴 등을 위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매년마다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의견수렴 및 계획수립이 중복되어 행정력이 낭비될 우려도 있을 것임

■ 감염병 등의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 대상 확대(안 제10조제1항 관련)

-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택시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대상 사업에 “감염병 및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 보호·예방” 등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2)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제8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택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등을 하기 위하여 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② 시장은 택시 운영·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 택시 운행실태 분석 및 택시정책의 평가와 당사자 의견수렴 등을 위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³⁾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예방 및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음

- 특히,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난기금 및 추경편성을 통해 지하철, 시내 및 마을버스 등에 대해서는 마스크, 방역물품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으나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사유로 대부분의 지원대책에서 제외되고 있음

하지만 택시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서울시의 주요한 준대중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으로부터 택시이용 승객과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할 것임

■ 택시업계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10조제2항 관련)

-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⁵⁾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

3)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4)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고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기금 조례”라 한다)제17조에⁶⁾ 따라 특별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이나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택시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택시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준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기금 조례⁷⁾가 규정하고 있는 특별자금 지원계획은 별도의 규칙⁸⁾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조례와 규칙에 의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다음표는 기금 조례 제17조에 따라 개인 및 법인택시 특별기금을 지원한 현황임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6)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7조(특별자금지원계획) 시장은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지원계획과는 별도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7)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7조(특별자금지원계획) 시장은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지원계획과는 별도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8)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9조(특별자금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특별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일간신문,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지역 및 지원업종
 2. 지원조건
 3. 그 밖에 특별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의 특별자금지원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용자대상 및 용자조건을 제8조 및 제9조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특별자금)>

(단위: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월	
	건수(건)	금 액	건수(건)	금 액	건수(건)	금 액	건수(건)	금 액
합 계	2	60	3	120	181	4,836	6	180
개 인	2	60	1	30	166	4,256	4	80
법 인	-	-	2	90	15	580	2	100

또한,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별 조례에 특별자금지원계획을 규정하는 경우 택시산업 이외의 다른 산업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다른 산업들 역시 각 관련 조례에 개별적으로 특별자금지원계획을 규정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조례운영이 연쇄적으로 야기될 우려도 있다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종합계획 수립)”을“(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택시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현 택시산업”을 “택시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존 택시정책의”를 “택시정책의”로, “평가”를 “평가 및 개선방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택시산업 관련 전문가,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을“(재정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전액”을 “전부”로,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운수”를 “택시운수”로, “교육”을 “교육 및 연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내 장치 설치”를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 장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감염병 또는 미세먼지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
및 예방

4. 그 밖에 택시 서비스의 개선과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융자조건을 완화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종합계획 수립) <u>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u></p> <p>1. (생략)</p> <p>2. <u>현 택시산업의 실태 및 문제점</u></p> <p>3. <u>기존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평가</u></p> <p>4. ~ 6.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7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p> <p>① <u>시장은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택시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1. (현행과 같음)</p> <p>2. <u>택시산업</u>-----</p> <p>---</p> <p>3. <u>택시정책의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방안</u></p> <p>4. ~ 6. (현행과 같음)</p> <p>② <u>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③ <u>시장은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택시산업 관련 전문가,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④ <u>시장은 종합계획과 연도별</u></p>

현행	개정안
<p>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수종사자의 교육 2.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택시 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내 장치 설치 <p><신 설></p> <p><신 설></p>	<p>실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0조(재정지원 등) ① ----- 예산의 범위에서 ----- 전부 -----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2. ----- 택시 운수종사자의 보호 장치 3. 감염병 또는 미세먼지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 및 예방 4. 그 밖에 택시 서비스의 개선과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신 설></p>	<p>②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가</p>

현행	개정안
	<p>「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제1호의 재난 발생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융자조건을 완화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